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2023.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471호(2015. 6.30.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6. 3. 1.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7호(2016.12.29.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867호(2017.12.20.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942호(2018.12.26.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168호(2019. 4.10.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17호(2019.12.31.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960호(2019.12.24.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267호(2020. 3.10.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379호(2020. 5. 7.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437호(2020. 6. 4.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34호(2022. 4.28.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545호(2022.10. 4.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140호(2023. 3.13.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821호(2023.12.28.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 20 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타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8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 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1)책임기술인	(15)	
	(가)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나)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다)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3)은 예시로 활용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실적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7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1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th> <th>95점 이상</th> <th>95점 미만 92점 이상</th> <th>92점 미만 89점 이상</th> <th>89점 이상 86점 미만</th> <th>86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점</td> <td>1.8점</td> <td>1.6점</td> <td>1.4점</td> <td>1.2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다. 신용도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 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 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p>※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신용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p>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	[15] (2)	<p>-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p> <p>-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table border="1"> <tr> <td>경과기간</td> <td>5년 미만</td>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10년 이상 2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p>-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투자실적	(10)	<p>-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50% 이상</td> <td>1.50% 미만 1.25% 이상</td> <td>1.25% 미만 1.00% 이상</td> <td>1.00% 미만 0.75% 이상</td> <td>0.75% 미만 0.5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p>-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p> <p>-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p> <p>-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p>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3)활용실적	(3)	<p>-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p> <p>-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p> <p>-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p>-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p> <p>-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border="1" data-bbox="544 1265 1422 1456">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활용건수(건)</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r> <tr> <td>활용금액(억원)</td> <td>20 이상</td> <td>20 미만 18 이상</td> <td>18 미만 16 이상</td> <td>16 미만 14 이상</td> <td>14 미만 12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마. 업무중복도		[10]	<p>-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p> <p>•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p> <p>※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p> <p>사례①)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p> <p>사례②)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p> <p>사례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p>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
			①	200%이하	200~250%	250~300%	300~350%	350~400%	...
			②	250%미만	250~350%	350~450%	450~550%	550~650%	...
			③	300%미만	300~400%	400~500%	500~600%	600~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책임기술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실무기술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td> <td style="width: 10%;">5% 이상</td> <td style="width: 10%;">3% 이상</td> <td style="width: 10%;">1% 이상</td> </tr> <tr> <td>가점</td> <td>0.2점</td> <td>0.15점</td> <td>0.1점</td> </tr> </table>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I.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

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 **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00-00 건설공사 00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3.1 책임기술인
 -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별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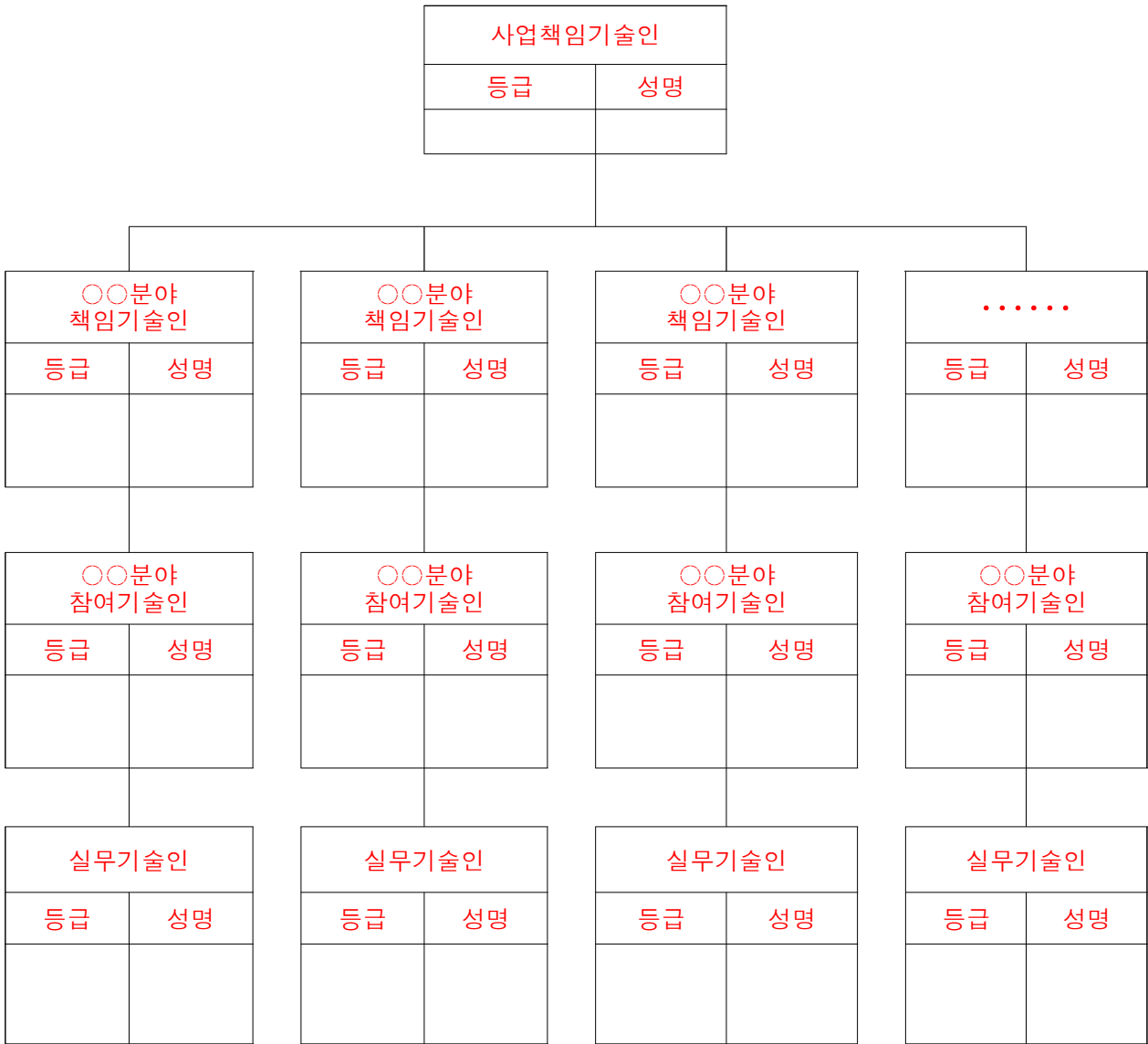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 ~ 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별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별점

○ 업체

회사명	합산별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별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00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p>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업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사업규모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외건설협회장(인)	
사업명			
발주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					
1) 사업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사업명					
발주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